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1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담연구기관인 '서울기술연구원'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
- 나. 2018년 설립예정인 '서울기술연구원'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기술연구원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
- 관련법령 :
 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4조), 민법(제32조),
 - 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(제8조)
“시장은 연구원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”

※ 조례 제정안을 이번 제277회 정례회에 제출

나. 주요 사업

- 재난 예방 및 대응(지진, 화재, 폭염·한파, 폭설, 산사태 등) 연구
-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(도로, 지하철, 주택건축, 교량 등) 연구
- 물 순환 및 하천관리(풍수해, 생태, 하수도 등) 연구
-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분야 연구 기능수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 필요
 -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기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비해 시민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
 - 서울시 각 부서의 기술분야 연구과제 선정 등 서울시 기술분야 연구 총괄 추진
 - 연구원의 독립성 강화, 장기적 발전 및 기술분야 연구영역 확장 등 기술분야 연구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
- ※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른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('17. 8) 및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('17. 9) 완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치사항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강정환(2133-8035)